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. 2. 12 선고 2018가단41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피 고 2. B

변론 종결 2018. 12. 11

판결 선고 2019. 2. 1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대 72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9, 8, 14, 13, 12, 11, 10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2㎡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, 위 (나)부분 12㎡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2. 5. 23.에 충남 서천군 D 대 729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'2012. 5. 1. 매매'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서천군 E 대 662㎡ 및 F 대 895㎡ 의 소유 자이다.

다. 한편,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, 8, 14, 13, 12, 11, 10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2㎡에 수목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[이하 위 수목을 '이 사건 수목'이라 하고,위 (나)부분 12㎡를 '침범 토지 부분'이라 한다]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대한 감정촉탁 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토지 중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,침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수현

별지